

중국의 주권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그 함의

崔志暎*

<목 차>

- I. 서론
- II. 근대 유럽에서의 주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 III.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구성
 - 1. 근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중국의 주권 관념의 형성
 - 2. 현대 중국의 주권 원칙과 주권에 대한 인식
- IV. 결론

I. 서론

현대 중국 외교는 “주권 외교”라 여겨질 정도로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주권에 대한 입장과 원칙, 그리고 정책적 추구는 명확하다. 1949년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주권에 대한 입장은 <共同綱領>이나 건국 후 <憲法>, 그리고 중국 지도부 주요 인사들의 외교 정책 담화 및 수교시의 <聯合聲明>에서 언제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천명되어 왔다. 이들 문서 혹은 담화에 드러난 현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입장은 대내적으로 “인민주권 원칙”과 대외적으로 “독립자주, 내정 불간섭”이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국제 관계 속에서의 대외 주권 원칙이 두드러지게 표상된다.

대외주권 원칙으로서 “독립자주, 내정불간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실천에 구체적으로 관철되어 왔는데, 국제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영토주권” 수호에

* 仁濟大 國際語文學部 中文科 專任講師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표출된다. 이 점에서 49년 이후 중국에는 무력 충돌까지 치달았던 대부분의 분쟁들이 모두 “국경”(defending China)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Segal, 1985). 특히 냉전 시기 血盟國으로 여겨졌던 소비에트 연방과 국경 지역을 둘러싸고 불거진 수 십 차례의 무력 충돌은 당시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을 넘어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하였던 유명한 일례이다. 이는 서구 국제 정치학의 전통적인 세력 균형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이후 중국은 “죽의 장막” 혹은 “비합리적 행위자”로 외부에 인식되며, 서구에 “중국적 외교 패턴”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 및 대외관계는 일견 유연해 진 듯 보인다. 그러나 홍콩, 마카오의 반환 문제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소수 민족 지역에 대한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경한 태도로 오히려 “國家大統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그 밖에 서사 군도, 남사군도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주권 주장, 최근 한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북 공정의 고구려 史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천명 혹은 실제로 관철되는 중국의 외교 정책 속에서 중국의 주권 의식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중국의 외교 정책 혹은 대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은 서구와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중국은 과연 비합리적인 행위자인가? 본 글은 주권에 대한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인식과 관념이 주권 원칙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를 보이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중국 근현대사에서 주권 담론의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중국적 합리성의 기초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중국의 “주권 관념” 혹은 “주권 의식”을 서구 주권 개념에 대한 중국적 “인식”과 “구성”으로 규정한다.¹⁾ 이는 주권을 고정 불변의 사실(fact)로 바라보는

1) 본 글은 “개념”을 특정 시공간에서 공유되는 경험을 추상화 한 것으로 동시대 상호 경쟁하는 여러 관념들이 고도화, 추상화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인식 주체가 현실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그러한 인식 작용은 인식 주체가 당시 처한 사회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주권의 개념과 관념에 적용시켜 보면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서구의 주권 개념은 근대 서구 유럽에서 각 국의 상이한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 다양한 관념의 형태로 경쟁해 오다가 근대 국민 국가의 성립과 함께 그 구체적 내용을 획득하며 개념적으로 고도의 추상화 이념화가 된 것이라 본다. 반면 이러한 서구적 주권 개념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 배경 하에 “구성”(construction)된 개념으로 현대도 여전히 다른 관념들과의 상호 경쟁 속에 구성, 재구성되고 있는 열린 체계로 보는 것이다.²⁾ 또한 이를 중국에 적용하여 근대 중국이 서구 중심의 국가간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은 특수한 사회 역사적 배경이 중국의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렇게 형성된 주권 관념은 현대 중국 성립 이후 일종의 원칙화된 신념체계로서 제도화, 규범화(주권 원칙 혹은 주권 입장)되어 중국 외교 정책과 행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본다.³⁾

물론 중국의 대외 관계 및 외교 정책 패턴을 행위 주체의 인식 및 관념과의 상관 관계만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자칫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국제 정치학의 주류적 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기초한 국가 이익 추구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적으로 중국의 중소 국경 분쟁이나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등에서 보여 지듯이 국가 이익에 대한 인식과 판단도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합리적 행위자의 예상되는 결과이나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고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본 글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과연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라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자명한 전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외교 정책과 패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있어 각 국 고유의 “인식”, “관념”이 끼치는 영향을 가정하고 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이 주목하는 것은 객관적 분석에 따른 합리적 행위의

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반식민지 상태라는 근대 중국의 역사적 배경 하에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주권 인식과 관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주권에 대한 특수한 인식이 중국의 주권 관념 혹은 주권 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입장과 원칙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2) 개념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도들이 있다. 사회적 관념 구성체로서 “주권”을 바라본 논문 모음집으로 “사회적 구성으로서 국가 주권”(Biersteker and Weber, 1996), 주권 개념 자체의 해체를 논한 포스트모더니즘 시각 “주권의 계보학”(Bartelson, 1995), 더 나아가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국제 정치 체제 구조 분석에 도입하여 인식의 문제를 논한 “국제 정치학의 사회이론”(Wendt, 1999) 등을 꼽을 수 있겠다.
- 3) 특정 관념과 구체적 행위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관념으로 인해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형상”(world image)이 행위 판단에 근거가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Marx weber, 280).

인과 관계이기 보다는 그러한 판단 과정에서 인식 주체가 주어진 판단의 자료(경험)와 이에 기초한 대상 구성적 인식 작용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우선적으로 근대 유럽 史속의 다양한 주권 관념의 구성과 발전을 고찰하여 오늘날 통용되는 주권개념이 사실상 근대 서유럽에서 각 국의 상이한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 다양한 관념의 경쟁을 통해 고도의 추상화 이념화가 된 “사회 구성적 개념”(socially constructed concept)임을 논증한다. 둘째, 중국의 서구의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을 전통적 중국 질서의 붕괴와 서구 주권 개념의 이식 및 수용 과정에서 그 형성을 추적해 보고 현대 중국의 주권 원칙 및 인권 담론을 통해 나타나는 주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서구와 구별되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특징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러한 “주권 인식”은 중국에서 주권이 서구와 달리 역사적으로 “해방의 담론(liberation discourse)”으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중국 특색 외교”의 자체 합리성 근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근대 유럽에서의 주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현대 국가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근대 서구 유럽의 시공간 속에서 근대 국가의 정치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권에 대한 각종 이론과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⁴⁾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군주 주권”은 프랑스에서 먼저 등장하였는데 “짐이 곧 국가”라던 태양왕 루이14세의 선언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지상 최고의 권력과 권위로서의 “주권”은 프랑스 사상가 장 보댕(Jean Bodin)의 이론에 잘 드러나 있는데 종교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된 조국 프랑스를 안정된 국가로

4)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오랫동안 신성 통치에 의해 지배되었던 유럽 대륙은 16세기 들어 중세 봉건 질서의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세속 군주들의 세력이 강화된다. 이들 세속 군주들은 일정 영토 공간에서 권력을 확보하고 교황의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분리시키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을 옹호하는 다양한 주권 이론과 사상이 등장했고 결국에는 “일정 영토 내의 배타적 통치 권력”으로서의 주권의 근대적 의미가 형성되게 된다.

통일 시키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주권에 근대 정치적 합의⁵⁾를 붙여 넣는다. 1576년 출판된 <공화국에 관한 6서>(Six Livres de la R publique)에서 보댕은 국가를 최고 권력을 가진 합법적 정부를 구비해 각 가정과 사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권을 모든 공민과 신민을 초월하는, 법률적 제제를 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이자 국가의 본질적 속성으로 정의하였다(Mattern, 1928, 2).

지정학적으로 유럽 대륙과 다소 떨어져 있던 영국의 경우, 같은 시기의 프랑스나 스페인과 비교해 볼 때 근대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토적 통합이 보다 수월한 편이었다. 반면 이 시기 영국은 근대 국가로의 발전과 함께 주권의 발전에서도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 주었는데 “시민 주권” 혹은 “의회 주권”의 등장이 그것이다. 1215년의 <대헌장>부터 청교도 혁명, 크롬웰의 공화국, 왕정복고 시기(1660-1688) 그리고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의 제정까지 파란만장한 국내 정치 투쟁 속에서 영국의 군주와 의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 즉 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최종적으로 누가 행사하는가?”를 둘러싸고 대립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회 권력의 승리로 귀착되어 군주의 주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 “군주주권”과 “의회주권”을 둘러싼 대표적 이론으로는 홉스와 로크를 들 수 있는데⁶⁾ 우선, 홉스는 인성(人性)에 대한 추상적 가정 하에 선과 악은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보존 욕구”에 따라 좌우되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야말로 말로 인간 행위의 근원적 동기라 보았다. 따라서 홉스에게 있어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즉 국가 탄생 이전의 사회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며 이러한 자

5) 보댕의 주권 개념 및 이론이 근대 정치적 합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선 보댕의 주권 이론의 전제가 일정 영토 단위 내에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동체”를 전제하였다는데 있다. 즉 독립된 각 공동체가 질서의 근거점으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에 선행하는 상위 개념의 권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댕은 이를 주권으로 본 것이다. 둘째 보댕은 신이 아닌 인간(the Man) 그 자체에서 절대 권력이자 권위인 주권의 연원을 찾았다. 물론 보댕의 주권 이론 속에서 인간을 신과 완전히 대립된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인간을 정치적 권력 및 권위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면에서 보댕의 주권 이론은 근대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Mattern, 1928, 2-4)

6) 그 외에도 주권의 연원과 행사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였는데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률>(1589)은 군주가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였고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1653) 같은 이는 군주의 절대 권력을 성경속의 아담이 신에게서 받은 가부장적인 통치에 비견하기도 하였으며 Louis de Bonald(1753-1640) 등과 같은 이는 주권의 귀속을 귀족에게 보는 “귀족 주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洛克, 1997(a), 5-7)

연 상태로 인한 전쟁과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각 개인은 계약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각자의 주권)를 포기하고 국가(거대한 주권자, 리바이어던(the Great Leviathan))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인공인간이 법을 제정하여 신민을 통치하게 된다고 보아 결과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군주 주권”을 옹호하게 된다(羅素, 2001, 71)

반면 로크는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등의 의회 권력의 승리를 배경으로 “의회주권”의 정당성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로크에게 있어 “자연 상태”는 홉스의 가정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흠결 없는 상태이다.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주권자에게 각자의 주권(사실상은 자연법 집행의 일부 권리)을 양도하여 국가를 성립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자연 상태의 불편, 즉 각자의 권리에 대한 분쟁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⁷⁾ 특히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및 대외 관계권(외교권)으로 나누고 최고 권력인 입법권을 의회가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주 혹은 정부가 헌법이 부가한 목적에 역행할 때(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 수립 본연의 목적을 거스를 때) 이를 해산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 “군주 주권”에 대한 “의회주권” 우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洛克, 1997, 5-7). 이와 같이 홉스와 로크의 주권 이론은 당시 영국의 군주와 의회 권력의 국가 최고 권력(주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 사회적 배경 하에서 주권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구성을 보여주며 주권 개념의 역동적 발전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17세기는 근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소위 국제(inter-national)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권의 대외적 개념이 발전(construct)된 시기이기도 하다.⁸⁾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지난(持難)했던 “30년 전쟁”

7) 이 경우 주권의 담지체와 주권의 행사체가 분리되어 주권의 절대성이 훼손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나 로크의 경우 body politic으로서의 사회와 body politic을 대리하는 정부를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주권의 절대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최고권력(supreme power)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공존이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Body politic은 정치 조직 혹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인민의 총체적 개념이다. 즉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body politic으로서의 “사회”와 이(body politic)를 “대리”하는 개념으로서 “정부”를 상징함으로써 최고의 권력이 각각 양자에 속해 있지만은 헌법적 관계로는 충돌하지 않게 된다(Hideaki Shinoda, 2000, 26)

8) 조약한 구별임을 감수하고 구분해 보자면 주권은 대략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 두 개념으

(1618-1648)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 영토 내 통치자는 그 영토 범위내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특정 영토내의 주권 원칙을 확립한다. 17세기 발전한 대외적 주권 개념은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주권 이론에 반영되어 그 어떤 상위 권력이나 권위의 제제도 받지 않는 국가의 절대권력으로서의 주권 개념(徐大同, 1885, 176)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동시에 국제 관계 속에서 국제법에 의한 규율을 제시한다(劉杰, 2001, 55).

이와 같이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통치권을,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함의를 지니게 되며 국가의 본질적 속성이자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점차 보편성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 다만 평등과 독립을 의미하는 주권의 대외적 개념이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 그 함의를 쟁취해 나갔다면 한 국가 영토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 대내적 개념은 그 후 각국의 정치 발전과 함께 주권의 연원과 귀속, 범위 등을 둘러싸고 그 구체적 의미를 획득해 나가게 된다.

18세기 “국민 주권”은 근대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함께 탄생한 시민 계층이 군주 혹은 특정 계층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확보하려는 역사적 진통 과정 중에 탄생하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s), 1791년 공화국 헌법 등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문헌상으로 규정하게 된다(Mattern, 1928, 27). 이후 전 유럽대륙에서 주권은 점차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연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

“루소가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던 나폴레옹의 말처럼 루소의 “인민 주권”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실질적 만민 평등의 “국민 주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루소는 사유재산의 출현이 인간의 타락을 가져와 사회

로 나누어 질 수 있겠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 개념은 근대 국가의 속성으로서 발전 해 오는 과정에서 구체적 영토 내라는 공간적 한계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로 그 범위가 한정되면서 주권은 유럽 근대사 속에서 주권의 최고 권력 행사와 관련된 대내적 개념과 타국의 일정 영토 내에서의 절대 주권을 보장하는 “독립과 평등”으로서 대외적 개념으로 구분되게 된다. 근대 유럽 국가간 체제 속에서 주권의 대내, 대외적 개념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정치 영토적 질서 관념으로서의 주권 국가 체제”(Murphy, 1998, 88-89) 참고.

불평등의 기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盧梭, 1992, 111), 홉스나 로크와 달리 “고귀한 야만인”의 자연 상태를 상징한다(盧梭, 2001, 22-23). 또한 개인의 자유와 주권자에 대한 복종이라는 자율적 인간에게서 대립되는 두 개념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일반 의지”(general will)를 논하였으며 주권의 최종적 귀속점이자 그 권력을 행사하는 추상적 실체로서의 “인민”(people)을 주권의 담지체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주권의 절대성과 더불어 도덕적 권위(popular sovereignty)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羅素, 2001, 240 / 盧梭, 2001, 188). 루소의 주권 이론은 <1793년 프랑스 공화국 헌법>에서 “인민 주권”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시대 상황에 비견된 그 급진성으로 <1795년 헌법>에서는 대의제 형식의 “국민 주권” 원칙으로 타협된다. 그러나 주권이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속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실질적 만민 평등의 주권 이론을 발전 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하겠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 제국의 등장과 함께 주권 국가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⁹⁾ 각 지역의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근대 국민 국가 형성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세기 민족의 통일과 독립, 그리고 국민국가의 건설은 마치 세속적 신앙처럼 전 유럽을 휩쓸었다. 한편 이 시기 주권 개념은 국민국가의 형태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념적으로 고도로 추상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국가 그 자체”(the State itself),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국민”(the Nation as Whole)이 주권의 담지체라는 주장 뿐 아니라 독일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절대적 주권자로 상징하는, 즉 주권을 주권자 보다 높은 일종의 국가 의지로 보는 “국

9)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 대륙은 우선 정치, 지리적으로는 1806년 나폴레옹이 신성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에 일정 영토 규모의, 주권을 가진 20여개의 국가와 300여개의 제후국을 성립 시켰다. 이는 구 신성 로마 제국에 프랑스의 안전을 위협할 규모의 제국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으며 그 결과 다양하게 세분화된 지역 단위 국가들은 프랑스에 위협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로 인해 얻은 국가적 지위 때문에 프랑스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1796-1814년 전후로 이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은 이 지역의 과도기 공화국 체제를 흡수하여 훗날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서 유럽 대륙의 가장 대표적인 제국 체제인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 권이 강력한 이탈리아 지역에 주권 국가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으며 이는 1814년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지고 등장한 신성동맹과 비엔나 체제(1814-1815)에서도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Murphy, 1996, 93-96).

가 주권”, 혹은 “법 주권”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hinoda, 2000, 49/Mattern, 1928, 31-40).

이와 같이 주권은 근대 서구 각국의 역사와 사회라는 특수한 배경과 경험 속에서 근대 국가의 발전과 함께 “군주주권”, “의회주권”, “국민주권”, “인민주권”, “국가주권”, “법 주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통해 추상화된 개념으로 발전(construct)되어 왔다. 즉 개념의 발전 양상을 통해 볼 때 근대 유럽의 시공간 속에서, 다시 그 속의 각 국의 역사 사회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권 관념들이 인식되고 경쟁, 구성, 재구성 발전 되면서 그 실체인 근대 국가가 구체화됨에 따라 보편적 개념으로 그 내용을 획득해 왔다고 하겠다.

Ⅲ.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구성

19세기 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지리상의 발견 등으로 세계로 나선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둘러싼 각축전을 벌이며 전 세계 단일 범위 내의 국가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근대 국가의 본질적 속성이자 국가간 체제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주권 개념도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이식 및 수용된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의 권리로서 주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유럽 및 서구 국가들에게만 국한되었으며 형식적이라도 주권이 국제 관계 속 모든 국가들이 향유하는 개념으로 관철된 것은 1,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라 하겠다. 그 이전의 세계 속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체제, Bull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와 “국가들의 체제(systems of states)”만이 존재할 뿐이었다(Bull, 1977, 8-20). 따라서 <웨스트팔리아 조약> 등과 같은 합의된 주권 질서는 그 합의를 이룬 공동체의 성원들, 즉 유럽 국가간 체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유럽 지역 정치 실체들과의 관계는 개별적 조약이나 협의에 따라 규율되었다. 결국 힘의 불평등 배분 속에서 조약은 자연히 “불평등 조약”이 되고 힘이 더 약한 정치적 실체들은 식민주의 통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겐 전통적 동아시아 강국이었던

중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1. 근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중국의 주권 관념의 형성

1) 전통적 中華 질서의 붕괴와 서구 국제 체제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전통적 중국 질서(中華秩序) 속에서 세계는 천자의 은덕이 미치고 천자가 통치하는 문명 세계와 그렇지 못한 야만 세계, 단 두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속에서 전통 중국은 천자의 나라로서 절대적인 우월권을 가진다.¹⁰⁾ “宗藩體制”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관계 규율 규범 체계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중국 질서 속에서는 서구의 근대 국가간 체제 속의 “평등한 국가”, “주권적 국가”로서의 대외적 주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겠다.

전통적 중국 질서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있던 중국은 개항과 통상 압력에 직면하면서 서구 세계가 어떤 원리로 규율되는 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洋夷들과의 교섭에서 국제 법을 알아야 함을 절감하고 최초로 이를 중국 국내에 소개한 이는 林則徐로 양국간의 교전, 봉쇄, 금수 및 외국인 대우에 관한 내용을 <各國律例>란 이름으로 발췌 번역하였다(肖佳玲, 2003, 201). 또한 미국 선교사 Martin은 독일 법학자 블룬츨리(Bluntschli)와 미국 국제법 학자 휘튼(Henry Wheaton)의 저작을 각각 <公法會通>과 <萬國公法>으로 번역하여 서구 국가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운용규율을 중국에 소개한다(石源華, 1991, 677, 693). 국제법

10) 물론 이때 천하는 물리적 영토적 개념이기 보다는 천자의 공덕이 미치는 혹은 미쳐야 하는 모든 지역을 일컫는다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천하에 대한 전통 중국의 인식은 당시 세계, 즉 천하를 그린 지도나 그림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기원전 168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西漢初期長沙國深平防區圖> 속의 <帛書地形圖>를 보면 長沙國과 南越 왕국사이의 동경 111-112도 3분, 북위 23-26도 사이의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천하로 상징하고 있다. 진나라 襄秀의 <愚公地域圖>, 당나라 賈耽의 <海內華夷圖>, 그리고 원나라 朱思本的 <輿地圖>등을 보면 중국이 당시 천하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지도뿐 아니라 <職貢圖>, <王會圖>, <朝貢圖> 등의 그림에도 당시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하겠다(葛兆光, 2001, 362-367)

과 서구 근대적 국가 관계에 대한 소개는 새로운 교류 방식이라는 면에서 정부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근대 중국이 적극적으로 서구 국제 관계를 인식하고 참여하는데, 그리고 그 준거 원칙인 주권, 특히 국제 관계 속의 주권원칙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와해와 새로운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근대사적 전환 속에서 중국은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처음 서구 중심의 국제 체제 질서 속에 막 편입한 중국에게 있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간 교류의 기본 원칙이며 “만국의 큰 법(萬國之大和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夏東元, 1982, 544, 387). 국제법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교류는 각 주권 국가들의 협의에 근거하여 규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이 대면해야 했던 세계는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약육강식의 현실적 국제 정치였다. 국제법은 각 국이 준수해야 하는 “큰 조약(大和約)”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 구속력은 각 국의 규모와 힘의 우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국가간 힘의 우위가 별 차이가 없을 때는 그 관계가 公法에 의해 규율될 수 있지만 힘의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는 公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세계 질서로 편입한 중국이 직면한 “만국의 세계”는 공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약육강식의 무참한 정글 같은 세계였다. 이러한 국제 현실은 일찍부터 서구와 접촉했던 지식인들에게 비교적 민감하게 다가왔다. 광서 17년 소장과 학자 崔國因은 칠레와 미국이 충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오늘날 리(理)만이 있고 세(勢)가 없으니 리(理)로서 사람을 설복시키지는 못하는구나!…… 공법이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조약이 있으나 의거할 만하지 못하다. 오로지 강자만이 리(理)를 펼 수 있으니 국가라는 것이 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겠구나(崔國因, 1988, 390-391).”

19세기 말 이래로 국가의 운명에 관해 느끼는 초조함과 긴장은 중국 지배층과 지식계 인사들의 모든 사상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생존(국가 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부강과 힘”이지 문헌상의 국제 법은 아니었다. 洋人들을 이기

지 못하면 중화 문명의 존재 가치는 사라질 것이며 그 순간 중화민족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당시 이러한 중국의 국제 체제 인식에 일조를 한 것으로 전 세계를 풍미했던 “사회 진화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진화론은 일찍부터 서구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영국에 유학까지 했던 嚴覆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영국 생물학자 헉슬리(T. Huxley)의 논문집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을 편역한 <天演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물은 진화하는 것이다. 진화는 사물의 경쟁과 하늘의 선택, 즉 자연 도태로 인한 것이다. 처음에는 종(種)과 종(種)의 경쟁이나 나중에는 군집과 군집의 경쟁이 되고 약육강식의 자연 선택을 거쳐 생존과 번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嚴復, 1986, 16).”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그가 중화 민족의 생존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강(自強)이다.

“한 민족의 생존은 그 민족 자신의 분투노력과 스스로 강해짐(自強)의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인도, 폴란드 등은 이미 열강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었다. 만약 중화민족이 아직도 세계와 경쟁하고자 하는 의식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도, 폴란드 등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경쟁과 도태 메커니즘’의 강자들이다. 약자인 중화민족의 급선무는 群(중화민족)을 보호하고 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嚴復, 1986, 1331).”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 진화론은 嚴覆, 譚嗣同 등과 같은 체제 내 개혁파 관료들뿐 아니라 혁명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孫中山은 진화론에 근거하여 그의 독특한 민생관을 피력하였으며(孫中山, 1981, 365) 사회주의자 陳獨秀도 진화를 우주 만물의 기본 규칙으로 파악하여 인간, 국가, 사회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경쟁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陳獨秀, 1984, 150-151). 결국 이들에게 혁명은 진화 과정에서 사회 정치 변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한편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 체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가열됨

에 따라 중국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심화되어 표상되기 시작한다. 1911년 辛亥革命 이전까지 이미 18개 국가가 淸정부와 각종 쌍무 조약을 맺어 사법, 행정, 경제, 정치, 군사 등 분야의 특권을 누렸으며 중국 13개 도시에 24군대의 租界가 설정되어 “국가속의 국가(國中之國)”를 형성하고 있었다(王建郎, 2000 ; 費成康, 1999).

辛亥革命 이후에도 정치군사, 외교적으로 취약했던 중화민국 정부는 불평등 조약에 대해 “淸 정부와 체결한 각종 조약은 만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한다” 정도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肖佳隸, 2003, 217). 또한 중국이 대독전쟁에 참여한 1차 대전의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파리강화회담>은 중국에게 발언 기회는커녕 산둥에서의 독일의 특권 내용을 포함한 일본의 <21개 조항>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워싱턴 회의>에서 철회되었으나 이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기타 열강들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승국으로서 중국이 겪은 국제 현실은 과연 “공리(公理)가 강권(強權)을 이기지 못하는” 세계였던 것이다(王建郎, 2000, 43).

반면 중국의 대외 주권이 국제 관계 속에서 확보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방어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1942년 미영소 등 26개 국가는 <연합국가 선언>을 발표하고 중국을 동맹국의 일원으로 끌어 들인다. 1943년 1월 미국과 영국은 중국과 상호 관계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에서의 治外法權, 租界, 領事裁判權 등을 포함하는 불평등 조약 폐지를 선언한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국가의 독립과 평등(대외 주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公理인 국제 법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중국의 국력의 증가와 국제 지위의 제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하였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세계로 나온 중국에게 국제 체제 질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인식되었으며 그 속에서 중국의 지배계급과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당면했던 문제는 어떻게 해서 국가의 생존을 유지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국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생존, 즉 국가 주권(國權)의 보존은 부강(富強)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공식을 성립 시켰으며 “사회 진화론”은 이를 합리화하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하겠다.¹¹⁾

2) 중국의 대내 주권에 대한 인식과 발전

한편 전통 중국 질서 속에서 군주의 권력과 권위의 합법성은 “하늘(天)”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맹자는 “순이 군주가 된 것은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라 했으며 董仲舒는 天子(하늘의 아들)에게 인간 세상만사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하늘(天)이라 하여 전제 군주의 신민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하였다(朱義祿, 1998, 11-12). 그 후 朱子에 이르러 천은 만물의 보편적이치, 즉 理로 더욱 체계화 되며 이를 받드는 군주(天子)의 통치 권력은 선형적이고 분할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상정된다(朱義祿, 1998, 12-13). 따라서 “主權在民”의 근대적 개념 역시 전통 중국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하겠다.

한편 19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 등 서구의 “천부인권설”의 소개와 함께 主權在民의 개념이 중국에 수용되기 시작한다. 馬建忠은 “생득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연계하여 인민 주권(石源華, 1991, 698)을 康有爲는 <大同書>에서 봉건 국가 및 가족 질서의 개인의 권리와 독립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며 천부 인권의 이상적 세계 속의 절대적 평등을 옹호하였다(鄭杭生, 1993, 264-265). 嚴覆의 경우, 루소의 영향을 받아 국가라는 것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며 공정하고 현명한 이를 선택해 군으로 세우니 민이야말로 천하의 진정한 주인(故民是天下之眞主)이며 관은 국가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官是國之公僕)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주권재민을 주장한다(肖佳玲, 2003, 204-205).

그러나 중국의 경우 거세지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민족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 즉 대외 주권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것이 바쳐져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의식

11) 이에 대해 중국학자 葛兆光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중국과 서구의 문명은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다른 성질의 두 문명이다. 혈연과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통적 제도 질서와 개인과 권리 의무체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서양의 근대 제도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그 우위를 비교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침략이 문명간의 경쟁처럼 인식되면서, 또한 서구의 ‘이성과 과학’이 그러한 문명간의 우위를 구별해 줄 유일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처음부터 비교 불가능했던 서로 다른 두 문명은 경쟁으로 파악되고 옳고 그름은 경쟁을 통한 득실로서 판단되게 된다. 결국 문명간의 우열은 누가 경쟁에서 강한가를 통해 구별 되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인식하기 시작한 세계는 유아독존의 중국 중심의 문명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었으며 그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존망이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중국은 이를 약육강식 속의 문명간의 경쟁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葛兆光, 2001, 462-463).

이 널리 확산되어 간다. 특히 1895년 청일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같은 동양 국가이자 열도의 섬에 불과했던 일본에 무참히 패배했다는 충격은 “어떻게 해야 부강해 질 수 있는가? 어떻게 힘을 키워 국권(國權)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군주는 군주대로 개화와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혁명대로 각 계급 및 계층이 주권의 담지체로 자리매김하고자 치열한 정치 및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즉 군주의 경우 전통적 군주 권을 계속 유지 하고자 하였고 개화와 관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권력 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게 된다. 1875년 <萬國公報>는 <譯民主國與各國章程及公議堂解>라는 문장에서 “三權分立”을 중국에 소개하였으며 王韜는 “議會”를 “군주와 신민을 이어 주는데 효율적”(則以君民上下互相聯絡之效也)인 제도로 간주하였고, 馬建忠은 李鴻章에게 의회제도 도입을 적극 권의하기까지 한다(肖佳玲, 2003, 202-203). 또한 梁啓超가 상해에서 주필을 맡은 <時務報>는 지속적으로 “민권을 일으키고 관제를 바꾸자(興民權, 變官制)”는 의식 운동을 펴나갔으며 결국 康有爲 등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곧 통하게 된다(窮則變, 變則通)”라는 믿음 하에 變法과 自強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시각은 光緒帝(1871-1908)의 결단 속에 제도권 내의 체제 변혁 운동으로 이어 지기도 하였으나 慈禧 태후 등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주권의 담지체로 군주가 아닌 국민을 상정하는 (비록 추상적 민권의 단계에 불과했지만) 시도는 103일의 실험에 그치고 만다.

위로부터의 정치 개혁이 실패로 돌아 간 후 서구 제도나 기술의 단순한 도입보다는 이를 뒷받침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상과 이론 학설 등 “근본”을 배우고자 하는 의식은 서구 계몽사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일으킨다. 梁啓超는 <清議報>, <新民叢書> 등을 통해 서구의 천부 인권 사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으며 <民報>가 <프랑스 혁명가>와 <인권선언> 전문을, 鄒容이 <혁명군>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독립 혁명을 근거로 25개조의 정치 강령을 발표 하는 등 주권의 구성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일깨우고자 하였다(肖佳玲, 2003, 205-206).

그러나 현실 정치 속에서 중국의 주권 침해는 더욱더 가속화 되었고, 특히 외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淸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더욱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현 체

제의 틀 속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국에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안위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래서 이를 위해 보다 급진적인 개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孫中山이 창립한 흥중회 및 그 기관지 성격의 <중국일보> 등이 淸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정면으로 질책하고 나섰고 더욱 급진적인 “민주”와 “민권”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 결과 1912년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 정부인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 자유, 평등, 主權在民의 헌법 원칙을 수립한다. 그러나 군사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정부는 중국을 민족적 위기로부터 구해내기는커녕 서구 열강 틈새에서 그 존속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회는 더욱 불안정해 갔고 정치는 더욱 부패했으며 통치자의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안위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자산 계급 통치에 대한 실망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마르크스주의는 1890년부터 일부 지식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 저작들이 중국에 소개된 상태였다. 다만 자산 계급 통치에 대한 실망과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이 중국과 비교해 별반 상황이 좋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문명” 인식하게 하였을 것이다. 공산당 창당(1921년) 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의 핵심 역시 “불평등 조약 폐지와 주권 회수(廢除舊約, 爭取主權)”로 국제 관계 속에서 독립적 주권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에 각 당의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중국 근대사의 주류적 흐름으로 보자면 근대 중국이 찾았던 것은 민족 위기에서 중국을 구하고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 최적의 수단이었다. 초기 연안의 개혁파 관료들로부터 양무운동, 유신파의 입헌 군주제 주장, 그리고 신민주주의 혁명에 이르기 까지 서구 근대 계몽사상과 국민(혹은 인민)주권의 수용과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개량과 변법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민족적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는 것이었다. 淸정부의 봉건 군주제가 그 권위에 도전을 받고 결국 혁명으로 전복되게 된 것은 민족적 위기를 불러 오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던 통치 권력의 부패와 무능이 그 권위의 정당성 기반을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최초의 공화국 정부인 중화민국도 主權在民의 원칙

을 선포하였으나 중국의 대외적 주권에 대한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그 합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결국 급진적인 혁명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앞서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서구에서 일정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 발전해 나갔던 주권의 대내외적 개념 혹은 주권의 경계 설정은 중국에서는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기존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주권, 개혁파 관료들이 중심이 된 君臣同治, 그리고 체제의 전복을 통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혁명의 주장까지 “주권의 행위체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정치 투쟁과 사상 및 담론 투쟁이 거의 동시에 거세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외부의 절대 주권의 팽창이라는 위협 속에 중국의 대내주권의 발전(construct)은 태생적으로 공간적, 지역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 즉 근대 중국의 대내적 주권에 대한 인식, 즉 통치 권력의 합법성과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주권의 담지체를 상상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민족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국가의 독립과 생존(대외적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근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했던 것은 대외적 주권, 즉 국가의 생존과 독립이었으며 그 결과 중국에서의 주권은 국가의 대외적 주권이 상당 부분 대내적 주권(통치 권력)의 합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하겠다.

2. 현대 중국의 주권 원칙과 주권에 대한 인식

1) 외교 정책 및 실천 중의 주권원칙

현대 중국의 주권 원칙은 대내적으로 “인민 주권”과 대외적으로 “내정 불간섭, 독립자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문서상 “주권원칙” 혹은 “주권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서 기본 틀이 확립되고(제54, 56조) 건국 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그 정신과 원칙이 명확해졌다(序言 참조).

우선, 1949년 인민 공화국 성립이후 “인민주권” 원칙은 대내적으로 중국 주권 원칙의 기본적 함의라 할 수 있다. 이는 “인민이 역사의 추동자 이다”라는 사회주

의 민주 사상을 토대로 철저히 계급적 각도에서 공산당 독재를 선언하는데 49년 중국 공산당 제7차二中全會에서 毛澤東은 “무산계급 영도하의 勞農 연맹을 주체로 하는 인민민주독재(專政)의 공화국”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적 현실과 결합한 인민주권 원칙을 확립 시켰다(張啓華, 2001, 44-47). 정식 헌법 제정 이전 헌법적 역할을 하였던 <共同綱領>은 “인민주권”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 계급 지도하의 노동연맹을 토대로 하여 각 민주 계급과 국내 각 소수 민족과 단결하여 인민민주 독재를 실시한다”(공동 강령 제1조).

“무장력은 인민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 임무는 중국의 독립과 영토 주권을 보전하고 중화 인민의 혁명적 성과와 모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공동 강령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각급 인민 대표 대회와 각급 인민 정부로 한다”(공동 강령 제12조).

1954년 정식으로 제정된 <헌법> 역시 이와 동일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 국내 정치적 불안을 거쳐 개정된 <78헌법>과 <82헌법> 모두 인민주권 원칙 조항을 회복시켰으며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내적 주권으로서 인민주권 원칙을 확립시킨다.

중국의 주권 원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제 관계 속의 대외주권 원칙이다. 공화국 수립 이전 국민당과 공산당은 불평등 조약 폐지를 통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최상의 정치적 과제로 삼았으며 대외 주권 수호에 대한 열망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건국 초기 중국의 국가 주권에 대한 입장에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신 중국의 국가 주권 입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반드시 독립해야 하며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 중국의 일은 중국 인민들이 나서서 처리 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의 터럭만큼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毛澤東, 1991, 1468-1482)”.

이에 따라 건국 후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 외교 정책의 목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견지나 세계 혁명, 중공업 우선 위주의 경제 정책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 및 현대화 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대만을 포함하는 영토 주권 수호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민 공화국 수립 후 우선적으로 제국주의 침탈에 손상된 주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여 <共同綱領> 제5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조약과 협의를 모두 부정하고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행위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으며(另起爐灶, 打掃干淨屋子再請客), 특히 이 시기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한다.¹²⁾ 또한 혈맹국이었던 소련과의 <동맹 조약> 체결도 스탈린의 중국 동북부와 신강 지역 요구에 대한 毛澤東, 周恩來 등의 단호한 거절로 상당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건국 초기 소련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입장을 고려 할 때 대단한 외교적 의지의 관철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 뒤 중국은 소련에 더욱 “편향(一邊倒)” 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상황에서도 장춘 철도를 회수하고(1952.12.31) 여순 항으로부터 소련군을 철수 시켰다(1955.5.23). 이와 같이 주권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입장은 훗날 소련 과학자들의 철수와 함께 이념을 넘어선 중소 분쟁의 불씨가 되어 1960년대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一見 “상당히 모험적이고 급진적이며 비합리적인” 외교 노선을 걷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제 분쟁을 살펴보면 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대부분의 분쟁, 특히 무력 충돌로까지 치달았던 분쟁들이 모두 “주권 수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부터 1996년 사이 중국이 무력 행동을 감행한 경우가 8차례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전쟁(1950-53), 대만 해협 양안 위기(1954-56, 1958),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1962), 중인 국경 분쟁(1962), 미국 침공에 대항한 베트남 지원(1965-68), 중소 국경 분쟁(1969), 중월 국경 분쟁(1979)과 최근 대만

12) 사실상 이는 합리적 행위자를 전제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즉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려고 결정한 시기에 중국은 미국과의 물리적 힘의 관계에서 압도적 열세에 몰려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정권 장악이 완전히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중국이 미국의 직접적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개입을 회피할 전쟁이었다 할 수 있다. 이에 서진영 교수는 주권 수호, 영토 보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본다(서진영, 2003, 153-178)

해협에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그것이다(1995-6). 중국의 무력 사용 사례들은 화이팅의 분류와 같이 예방적 방어의 목적(한국전쟁 개입), 억지 전략의 차원(중월 전쟁과 중소 국경 분쟁), 정책 목표와 강제(중인 분쟁과 베트남 전쟁) 혹은 강압적 외교 정책 수단(대만 해협 위기) 등 세분화 시켜 볼 수도 있지만(Whiting, Fall 2001, 103-131) 동시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은 영토 주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비타협적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실용주의적 노선에 따라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독립 자주 외교 정책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주권 외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우선, 비동맹 노선으로 현재 중국은 그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에 힘을 의탁하지 않으며 이들 중 어느 한 측과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한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독립 자주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비동맹이라 하겠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독립과 자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鄧小平, 1993, 53).”

둘째, 내정 불간섭 원칙이다. 중국은 이를 반패권주의 정책으로 구현시키는데 이는 중국이 타국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타국, 특히 국제 사회의 주도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측면이 크다.

“중국은 영원히 타인에 의한 내정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 제도는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결정되는 것이 타국에 의해 바뀌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 관계 신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정 불간섭이며 타국의 사회 제도에 대한 불간섭이다(鄧小平, 인민일보, 1990.7.12).”

독립 자주 외교 정책의 핵심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지적한다.

“중국의 일은 중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중국인들의 힘에 의지하여 처리한다. 독립 자주, 자력갱생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우리의 출발점이자 근거점이다. 중국 인민은

다른 국가와 인민들과의 우호 협력을 소중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분투노력해서 획득한 독립자주의 권리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한다(鄧小平, 인민일보, 1982.9.2)."

결국 개혁 개방 이후에도 현대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 독립과 자주를 핵심으로 하는 주권 수호 원칙의 관철이라 하겠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최고-최대의 과제는 현대화와 경제 발전이며 이러한 목표 하에 외교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중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등 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인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인식론적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사실상 개혁 개방이후 일견 유연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중국은 대만, 홍콩 등 주권 범위로 인식되는 문제에 한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주권은 토론이나 협상을 할 문제가 아니다", "주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 등의 입장은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고수되었고 천안문 사건 이후 인권을 앞세운 서구의 공세에 이를 내정 불간섭으로 규정하고 미 주재원의 퇴거 조치와 각종 장학 사업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미 보복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만으로의 F-16기 판매 문제에 대해 인민 해방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연습 훈련(1996)을 강행하였으며 티베트, 중국 민주화 등과 관련한 주권과 인권의 갈등은 중미 간에 끊임없는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외교 행위 패턴을 예측함에 있어 파이팅은 영토와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는 대단히 갈등적인 행동 양식을 보일 것이며 소수 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국제 여론에 상관없이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Whiting, 2001). 서진영 교수의 경우에도 미국과 대만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중국의 무력 사용이 억제될 것이라 보는 것은 오관이라 진단한다. 즉 만일 미국의 지원 하에 대만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 그 수위가 주권 국가로서 중국의 굴욕이라 인식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군사력의 조건에 상관없이 결국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서진영, 2003).

이와 같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인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국이 서구와는 다른 인식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권 수호, 영토 통일에 대한 강한 집착과 확신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 중국 외교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표출되고 있다 하겠다.

2) 인권 담론¹³⁾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인권백서> 및 학술계 담론을 중심으로

1991년부터 거의 매년 발간되는 <인권 백서>는 자국의 인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개화 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구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이 점에서 <인권백서>는 선언적이고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글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19편의 <백서>¹⁴⁾와 학술계 담론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13) 사회주의 국가의 계급 해방을 통한 인간 해방이라는 명제 하에 중국에서 “인권”은 오랫동안 자산 계급의 구호로 치부되어 왔고 그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문화 대혁명의 피해를 입은 지식인들에 의해 인권을 포함한 민주화 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80년대 말 까지도 인권은 자산 계급의 구호라는 인식이 중국 정부와 학술계 담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국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 지시를 내렸었고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단순히 변호하는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인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14) 19편의 인권 백서는 다음과 같다. 中國的人權狀況(1991.11), 中國改造犯罪的狀況(1992.8), 西藏的主權歸屬與人權狀況(1992.9), 中國婦女的狀況(1994.6), 中國知識產權保護狀況(1994.6), 中國的計劃生育(1995.5), 中國人權事業的進展(1995.12), 中國的兒童狀況(1996.4), 中國的環境保護(1996.6), 中國的糧食問題(1996.10), 1996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1997.3), 中國的宗教信仰自由狀況(1997.10), 西藏自治區人權事業的新進展(1998.9), 中國的少數民族政策及其實踐(1999.9), 中國人權發展五十年(2000.2), 西藏文化的發展>(2000.6), 2000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2001.4), 西藏的現代化發展(2001.11), 中國的勞動和社會保障狀況>(2002.4).

구체화 시켜 보고자 한다.

우선 <백서>를 통해 살펴 본 중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국제 사회의 보편 개념으로 인정한다. 즉 인권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원칙이자 <UN헌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을 가지는 국제적 규약임을 인정하며 <UN 헌장> 및 관련 규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그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이 서구의 인권에 대한 관념과 인식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의 전제하에 그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한다. 즉 중국의 경우, 인권, 특히 국제 관계 속의 인권 이념의 실현과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국가 주권”이 수호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서로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인민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인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들어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에 반대하며…(國務院新聞辦公室, 1998, 51)”.

두 번째로 인권을 인식함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이 특수한 시대와 특수한 지역이라는 구체적 상황과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인권의 보편성이 각국의 특수성(중국의 경우, 특수성을 국가, 민족 등 지역 범위로 국한시킨다)내에서 그 역사적 배경, 사회 제도, 정치, 경제적 발전 수준, 문화적 전통 등 구체적 제약 속에 실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인권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본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그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데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UN이 통과시킨 규약이라 할지라도 각국에 일률적 잣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결국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역사나 상황을 떠난 일률적인 기준 보다는 實事求是적 태도로 인권 보장이 행해지는 구체적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國務院新聞辦公室, 1998, 2).

셋째, 구체적 맥락 속의 인권이라는 인식의 전제 하에 중국은 자국의 國情에

맞는 인권 관을 견지한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인권관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연속선에서 마르크스, 레닌, 毛澤東 사상의 중국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응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가지는 구체성, 즉 國情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두 가지 점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듯한데 우선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으며…… 인구 대비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鄧小平, 1983, 149-150)”.

결국 세계 각 국 및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념과 인식에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경우 중국 國情에 맞는 인권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중국적 國情(혹은 특수성)과 관련하여 백서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현대 중국이 처해있는 국내외적 어려움”, 즉 개도국으로서의 발전 수요 등을 주요하게 들고 있는데(國務院新聞辦公室, 1998, 1.6-7) 그 중에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우선 무엇보다 “생존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생존권의 문제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인권의 보장은 존립 기반부터 흔들리게 된다. 생존권의 중요성에 대해 江澤民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다……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국가의 독립권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으며 중국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江澤民, 인민일보, 1991.4.15; 1991.5.11)”

다만 중국이 인식하는 생존권은 개체에 보다는 국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의 생존권으로 개체의 생존은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생존 속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여기서 인권은 소수의 혹은 개체 단위의 개인주의적 인권이기 보다는 다수의 집단주의적 인권의식이라 하겠다.¹⁵⁾ 여기서 “집단적 인권=주권”의 개념적

15) 중국 중앙 지도부는 개체주의적 권리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속에서

인식이 가능해 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國權이 인권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난하고 약한 국가, 제 3 세계 국가들의 國權은 언제나 침범 당하고 있다. 인권, 자유, 민주 등의 미명하에 강국이 약소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도모한다(鄧小平, 1993, 345).”

결국 一國의 국가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개체의 인권도 확보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 주권의 확보가 인권 보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주권 우위적 인식에 의해 인권은 “국내 문제” 그 범위를 제한 받게 되고 특히 개체 중심적 인권은 생존권과 발전권의 중시에 의해 집단적 국가적 이익의 하부에 놓이게 된다. 또한 <백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霸權主義와 強權政治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근원적 저해 요인이라 보고 있다(李云龍, 1999, 122-123; 國務院新聞辦公室, 1998, 54). 인권에 대한 위협을 국가 권력이 아닌 타국의 주권으로 보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을 개체 중심이 아닌 민족 국가 단위로 파악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피부가 없는데 털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의 독립적 주권이 없다면 인민의 생존과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인민일보, 1991.5.11)”

“정확히 말하자면, 국권이 인권보다 중요하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 제 3세계 국가들의 국권은 늘상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 등의 구호는 강국이나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鄧小平, 1993, p.345)……“국가의 주권, 국가의 안보는 언제나 제일 순위이다.……서구의 몇 몇 국가들은 인권이니 사회주의 제도가 맞지 않느니 하면서 사실상은 우리의 국권을 훼손하고 있다. 강권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들은 인권을 논한 자격이 없다. 생각해 보라 그들이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가!(鄧小平, 1993, 348).”

전 인민은 더욱 더 인민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주의 정신을 드높여야 한다. 인간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애정을 보내며 공익을 생각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 배금주의와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경계 한다(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 1996, 13-14)”

결국 중국에게 있어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권 보장의 기본 전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가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¹⁶⁾

90년 대 이후 중국 학술계 “인권 열”이라 불리울 정도로 담론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2년부터 북경 대학, 인민 대학, 중앙당교, 수도 사범대 등 9개 대학 및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인권 이론 연구회의 논의를 대표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토론에 참여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인권에 대해 보이는 인식은 전반적으로는 정부 주축의 정책적 관점이나 국제 관계 속의 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치적 실용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기본적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나 동시에 그것이 “주권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상당히 모순된 논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설사 각각의 논리의 전개 과정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권은 주권 범위 내의 문제이며, 일국의 인권 보장과 실현은 주권국가를 전제로 해서 담보될 수 있고, 따라서 인권 보호는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인권은 무엇보다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등의(李林, 朱曉青, 1992, 423-424) <백서>에서 표방하는 입장이나 중국 지도부들의 인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을 근거로 한 주권 범위의 제한이나 간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¹⁷⁾

16) 이는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그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래서 일국의 국경(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서구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보편가치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타국의 주권 국가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서구 국가들의 인식과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 하겠다.

17) 물론 주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경우나 인권을 주권에 대한 견제 장치, 혹은 동등한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절대적 주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수준에서의 인권의 역할이며 절대적 주권에 대한 부정은 주권의 대외적 개념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내적으로 최고의 통치권이라는 속성보다는 대외적 평등과 독립, 즉 타국의 주권에 대한 불간섭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물론 정부나 학설계의 주류적 담론을 통해서 포착해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인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본 글은 정부나 학설계의 주류적 담론과는 구분되는 개개인의 인식과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또한 중국의 경우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의 결과로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표방하고 실행에 옮기는 원칙에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인식과 관념을 떠나 공동으로 지지되는 광범위한 인식적 기반이 존재할 것이며 바로 그러한 공통의 기반이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주권과 인권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 정찰기의 중국 영공 추락 사건에서 조중사의 신변 보장 등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자 했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를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분명히 규정하고 비타협적인 협상 태도를 보여 주었던 점(吳建新, 2001, 55-56, 62), 혹은 1999년 주 유고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 등에서 중국 정부 뿐 아니라 전 인민들이 보여 주었던 비타협적인 주권관과 주권 수호에 대한 집착(瞭望新聞周刊, 1999, 1)은 단순히 관 주도 이데올로기의 수용에 의한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하겠다.

IV. “해방의 담론”으로서의 주권-결론에 대신하여

중국의 주권 관념, 즉 중국의 서구의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과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고 하겠다. 첫째, 대외적 주권의 대내적 주권에 대한 우위이다. 중국의 경우, 주권 침략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생존이 우선이라는 국가주의적 테제가 널리 확산되어 갔다. 근대 중국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국제 체제 질서는 약육강식의, 공리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로 그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생존, 즉 대외 주권의 확보는 불가결한 것으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지켜 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정치사상 및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권체로 국민(혹은 인민)을 상상하며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 명제에 불과했을 뿐 궁극적으로는 救國, 즉 대외적 주권 우선 확보의 논리에 휩쓸리게 된다. 결국 근대 중국에 있어 대내적 주권, 즉 통치 권력의 합법성과 권위의 확보는 상당 부분 국가의 생존과 독립, 즉 대외적 주권을 얼마나 지켜 낼 수 있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중국의 주권 관념에서 대외적 주권 우위의 특징을 보여 주게 된다.

두 번째로 중국의 주권 관념이 보이는 특징은 주권이 집단적 인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인권담론을 통해서 살펴 본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에 치우쳐 있는 “국가 범위 내의 인권”, “국가 주권 상위의 집단주의적 인권 의식”이라 요약해 볼 수 있다. 서구에서 (국가)주권은 절대 권력으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절대 지배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발전해 왔다. 반면 중국의 경우, 근대국가 수립의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즉 (개체의) 인권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권을 지켜 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중국의 주권을 인권과 대립적 각이 아닌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발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서구 열강이 중국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상황에서 근대 중국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집단적 인권=주권”의 개념적 인식이 가능해 진다 하겠다.

세 번째 주권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해서 중국 근대사 속에서 “해방의 담론”(liberation discourse)으로 기능한 주권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조약한 구별을 무릅쓰고 中西의 근대사 속에서 주권과 인권 담론의 기능적 측면을 비교해 보면 근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유, 평등,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주의 사상의 흥기 속에서 사회 계약설, 천부 인권설, 민주주의 사상 등이 배태되었고 이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민주 혁명과 사회제도 변혁의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실정법이 인간 고유의 권리를 근원적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 인권 사상은 근대적 주권 이론을 확립한 홉스, 삼권 분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로크, 유기적 국가론의 루소 등에 의해 발전 되었으며 중국에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 수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인권 담론은 인간을 국가 권력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 신분 계급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

방시켜 정치적 진보와 실질적 평등을 이끌어 내는 “해방과 진보의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하겠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각 주체가 처한 시대적 상황, 서구의 “절대적(대외)주권”이 중국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국가의 온전한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은 자국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 즉 인권을 담보해 내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국제 관계 속에서 정치적 평등과 진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사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패권주의에 맞서 정치적 독립과 평등, 자유와 민주를 이끌어 내었던 “해방의 담론”으로 기능하였던 것은 “주권 담론”이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 근대사 속에서 주권의 해방과 진보의 담론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현대 중국에까지 이어져 중국의 주권 관념의 가장 중요한 인식적 기반을 형성하며 주권외교의 실질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중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외교 정책 패턴을 그 나라의 정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정치 체제 등의 이해를 통한 행위자 중심의 분석 틀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국제 정치학의 주요 담론인 구조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의 경우 중국 외교 정책 패턴을 설명하는데 행위자인 중국의 주관적 의도와 목표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제 체제의 물리적 힘의 구조라는 객관적 분석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과정이나 중소분쟁, 특히 반미와 더불어 동시에 반소 전선을 구성했던 6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현재도 대만과 신장 위그르 지역, 티벳 및 동북아 영토 주권에서 보이는 중국의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중미, 중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연속적인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모든 행위자들이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보편성을 전제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구조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 주체인 중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본 글에서는 주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중국 외교 행위를 산출하는 인식론적 기반을 규명해 보고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중국적 합리성”과 “중국 특색 외교”의 실체를 유추해 볼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서진영, 2003,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대외정책”, 우암 평화연구원 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서 2003.
- Alexander B. Murphy. 1996. “The Sovereign State System as Political-Territorial Ideal: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onsiderations”, in Thomas J. Biersteker and Cynthia Weber 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exander Wendt.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en S. Whiting. 2001 “China’s Use of Force, 1950-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6.2, pp.103-131.
- Gerald Segal. 1985. *Defending China*. Oxford University.
- Hedley Bull.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ideaki Shinoda. 2000. *Re-examining Sovereignty: from Classical Theory to the Global Age*. Great Britain: Antony Rowe Ltd. Chippenham, Wiltshire.
- Jens Bartelson. 1995. *A Genealogy of Sovereign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Weber. “Social Psychology of World’s Religion”, in H.Gerth and C.Wright Mills. eds. *Mar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as J. Biersteker and Cynthia Weber. 1996.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陳獨秀. 1984. “抵抗力”. 任建樹, 張統模 編『陳獨秀著作選編(第一冊)』, 上海人民出版社
- 鄧小平. 1982. “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開幕詞”. 『人民日報』(9.2).
- 鄧小平. 1983. 『鄧小平文選(第三卷)』, 人民出版社
- 鄧小平. 1990. 鄧小平對加拿大總理皮埃爾·特魯多的談話. 『人民日報』(7.12).
- 鄧小平. 1991. 『人民日報社論』(5.11).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人民出版社
- (法)盧梭 1992. 『論人類不平等的起源』, 商務印書館
- (法)盧梭 2001. 『社會契約論』, 商務印書館
- 費成康 1999. 『中國租借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葛兆光 2001. 『中國思想史(第二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國務院新聞辦公室 1998. 『世界人權叢書 中國人權百皮書總覽』, 新華出版社
- 江澤民 1991. “江澤民在會見美國前總統吉米·卡特一行時的談話”, 『人民日報』(4.15).
- 江澤民 1991. “江澤民與優秀殘疾人和助殘先生集體個人代表座談會時的講話”, 『人民日報』(5.11).

- 李云龍 1999. 『人權問題概論』,四川人民出版社
- 劉 杰 2001. 『經濟全球化時代的國家主權』,北京: 長城出版社
- 李 林, 朱曉青 1992. “十一屆三中全會以來人權問題概要”, 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編『當代人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毛澤東 1991. “論反對日本帝國主義的策略”, 『毛澤東選集(第一卷)』, 人民出版社
- 毛澤東 1991. 『毛澤東選集(第四卷)』, 人民出版社
- (清)崔國因 1988. 『出使美日秘日記』, 合肥: 黃山出版社
- 孫中山 1981. “三民主義民生主義”, 『孫中山全集(第九卷)』, 中華書局
- 王建郎 2000. 『中國廢除不平等條約的歷程』, 江西人民出版社
- 吳建新 2001. “維護國家主權和尊嚴- 箭析中美撞機事件”, 『時政熱點分析』, pp.55-56, p.62.
- 肖佳灵 2003. 『國家主權論』, 北京: 時事出版社
- 夏東元 1982. 『鄭觀應集』(上), 上海人民出版社
- 徐大同 1985. 『西方政治思想史』, 天津人民出版社
- 嚴 夏 1986. “原強”. 王拭 主編『嚴夏集(第一冊)』, 中華書局
- 嚴 夏 1986. “天演論(導言三按語)”. 王拭 主編『嚴夏集(第五冊)』, 中華書局
- (英)洛克 1997(a). 『政府論(上篇)』, 商務印書館
- (英)洛克 1997(b). 『政府論(下篇)』, 商務印書館
- (英)羅素 2001. 『西方哲學史(下)』, 商務印書館
- 朱義祿, 張勁敏 1998. 『中國近現代政治思潮研究』,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 『瞭望新聞周刊』(第20期, 1999, p.1.
- 『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 1996. 人民出版社, 1996, pp.13-14.

<中文摘要>

本文假設中國對(國家)主權的不同認識與觀念影響中國在外交政策與對外關係的主權問題上堅持不容妥協的立場, 并探討主權在中國近現代歷史中的功能性一面。首先, 本文通過考察主權在近代歐洲史所顯出的多種觀念證明當今國家間體系中通用的主權概念原來是在近代西歐各國的不同歷史、社會背景下不同觀念相互競爭, 最終高度抽象化、理念化的“社會建構的概念(socially constructed concept)”。尤其在傳統中華的瓦解與西方主權概念的傳入過程中探討中國如何認識、如何接受西方的主權概念并主要以政府文件與學術界的話語為中心考察現代中國外交政策中的主權原則與立場。本文認為中國有不同于西方的主權認識, 如對外主權高于對內主權, 主權在認識上與集個人權無多差別等。這主要是因為主權在中國的近現代歷史中扮演過西方人

權話語所扮演的“解放話語”(liberation discourse)的角色而導致。

중심어 : 중국외교, 주권, 중국의 주권관념, 인권, 사회구성적 개념, 해방의 담론